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06 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위성곤·모경종·김성환

김한규 • 주철현 • 이춘석

박희승 • 한병도 • 서영교

이건태 · 허 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,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 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.

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, 파견 경찰관의 선발,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,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 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

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3조 및 제144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3조 중 "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"를 "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신변보호를"로 한다.

제144조제2항 중 "파견을"을 "파견 및 국회경호대 설치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·파견하여야 하며, 파견자의 선발·파견·파견해제 시에는 의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 권한은 이 법 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3조(의장의 경호권) 의장은	제143조(의장의 경호권)
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	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
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	<u> 신변보호를</u>
을 행사한다.	
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(생	제144조(경위와 경찰관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	②
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	
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	
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	
<u>파견을</u> 요구할 수 있다.	파견 및 국회경호대 설치를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파견을
	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
	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
	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・
	파견하여야 하며, 파견자의 선
	발・파견・파견해제 시에는 의
	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른 의장의 지휘
	권한은 이 법 외에 다른 법률의
	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
	<u>아니한다.</u>